
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8.

발 의 자 : 이강일 · 김문수 · 백혜련
민병덕 · 김남희 · 박홍배
이훈기 · 박정현 · 김남근
손명수 · 황운하 · 송재봉
김 윤 · 강준현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조합등(지역조합, 전문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)의 조합장 또는 회장의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40조의3제2항 후단 신설).
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산림조합과 협의 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0조의3(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(생략)	제40조의3(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조합은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에 따른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”라 한다)에 위탁하여야 한다.<후단 신설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이 경우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산림조합과 협의 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.</u>